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자재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87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358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축자재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52조의7 신설)	2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3587호)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0. 14.
3. 회 부 일 : 2025. 10.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복합자재·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축자재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5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52조의7(건축자재의 통합관리정보 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정보 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1.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에 관한 사항</u> <u>2. 제52조의5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및 제조·유통·시공에 관한 사항</u> <u>3. 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u>

현행	개정안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①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¹⁾에 관한 사항, ② 건축자재등²⁾의 품질인정 및 제조·유통·시공에 관한 사항, ③ 품질인정기관³⁾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자재의 통합관리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함)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안 제52조의7제1항),

1)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함.

「건축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제2항 및 제3항).

현행 「건축법」 제52조의4)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된 ① 복합 자재, ②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③ 방화문 등 건축자재⁵⁾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②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③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④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뜻함.

「건축법」 제52조의5⁶⁾는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품질의 건축자재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서면 형태의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⁷⁾, 허가권자는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자재의 제작·유통·시공⁸⁾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들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생략)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8) (1단계)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 (2단계) 시공업체 → (3단계) 감리(또는 건축주)

9) 2019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시공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음(130개 현장, 195건 적발)

이에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서류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건축자재의 유통·시공 등의 이력을 전산화하는 종합정보체계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인력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5